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문화 등)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1년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1,977억원 내외	
투자 조건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 코넥스시장 제외 · 투자의 방법,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4. 주요출자 조건을 적용	
출 자 대 상	①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23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 선정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21년 3월 31일(수), 14:00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 특허기술사업화 분야는 접수마감일정 별도공지 예정	
조합 결성 시한	· 결성시한 :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계정	분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주1)}	선정 운영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신청가능 조합형태
문화	아시아문화 ^{주2)} 중심도시 육성	100	333	30%	1개 ^{주3)}	100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150	250	60%	2개 ^{주3)}	75	
영화	한국영화메인투자	210	300	70%	1개 ^{주3)}	210	벤처투자조합
	중저예산영화	152	260	59%	2개 ^{주3)}	76	
과기 정통	실감콘텐츠	280	400	70%	1개 ^{주3)}	280	
	공공기술사업화	100	200	50%	1개 ^{주3)}	100	
연구 특구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95	190	50%	1개 ^{주3)}	95	
국토 교통 혁신	국토교통혁신	100	170	59%	1개 ^{주3)}	100	
	국토교통 스마트디지털융합	100	170	59%	1개 ^{주3)}	100	
중진 (고용)	사회적기업	90	120	75%	-	-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주4)}	125	1,250	10%	-	125	
	IP클라우드펀딩	75	150	50%	1개 ^{주3)}	75	
환경	미래환경산업	300	430	70%	2개 ^{주3)}	150	
해양	해양 신산업	100	143	70%	1개 ^{주3)}	100	
합 계		1,977	4,366	-	-	-	

주1) '20년 출자사업에서 투자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비율 한도를 최대 10%p 이내에서 상향 가능하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결정

- 세부사항은 II.선정우대 및 선정배제 등 참조

주2) 광주광역시에서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

주3) 선정 운영사 수가 지정된 분야는 출자요청액을 자조합별 최대출자액에 맞추어야 함

주4) 성장사다리펀드에서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영사는 공동출자자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기술금융투자펀드 7차)의 출자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야 함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영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육성^{주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등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기업에 약정 총액의 3% 이상 투자) - 광주광역시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 - 광주광역시 지역의 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아시아문화에 대한 전승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 및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p>*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 및 '문화산업 연계기술' 기업 및 프로젝트</p> <p>** 광주에서 소비되는 제작비용이 당해 투자조합의 투자금 대비 60% 이상인 경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문화산업 연계기술(예시) ></p> <p style="text-align: center;">게임, 한국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공연예술, 문화신산업(DMB, 와이브로, IP-TV, 모바일용 콘텐츠) 디지털콘텐츠(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로 차세대방송(ICT+방송), 엔터테인먼트(ICT+게임), 정보콘텐츠(ICT+Life), E-Learning, SNS 콘텐츠(ICT+정보공유) 등)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 e-book/멀티미디어, 인터넷콘텐츠(문화콘텐츠요소 포함), 모바일, 음악, 방송영상물, 출판, 공예품, 미술품 등 문화와 관련된 분야</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콘텐츠기업 재기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 또는 각 호의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 기업¹⁾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로 재창업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 또는 총괄²⁾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 단, 일정 수준³⁾ 이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폐업 기업이 폐업 당시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가 아닐 것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세부 요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2) 총괄 :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제작·감독 등 기업이 영위하는 콘텐츠 분야 제작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수행해야 함(마케팅 제외) 3) 각 콘텐츠 분야별 세부 수준은 향후 협의 후 규약에 반영 예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피해가 증명된 기업 (예. ▲매출실적 감소기업(전년대비 10% 이상), ▲코로나19 관련 정부정책 대상 기업(코로나 특례보증서 발급, 보증만기 연장기업),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업 등) <p>* 세부 수준은 향후 협의 후 규약에 반영 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주2)} 한국영화 메인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 100%(타 분야 투자금지) 투자하되, 순제작비 6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45% 이상, 순제작비 3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25% 이상 메인투자* - 단, 메인투자를 위한 기획개발 투자 시, 해당 투자금액만큼 주목적 투자 인정(기획개발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완료된 영화의 순제작비 예산규모에 따라 분리 적용)</p> <p>* 메인투자(동시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크레딧에서 '제공'으로 표기되며, 투자한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및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 등 '제공'회사의 역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수행함 - 메인투자한 영화의 지적재산권(IP) 활용 권한은 제작사가 보유하며, 제작사는 IP활용권한을 타인(타사)과 공동소유할 수 있음 - 창투사 등 VC와 공동메인투자 시, 최대 3편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 <p>○ 조합결성 2년 6개월 내 약정총액의 40%, 5년 내 100% 이상을 한국영화에 투자</p>
중저예산 영화	<p>○ 한국영화 100%(타 분야 투자금지) 투자하되, 중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45% 이상 투자, 저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p> <p>* 중예산 한국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이상 60억원 이하 한국영화. 단,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시나리오 공모전 선정작 포함, 차기작 기획개발지원은 제외) 작품 투자 시, 투자금액만큼 중예산 한국영화 투자로 인정</p> <p>** 저예산 한국영화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 한국영화.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만큼 저예산 한국영화 투자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개발 투자 시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작(독립예술영화(다큐 포함) 제작지원 및 애니메이션 영화종합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작품 투자 시 <p>○ 조합결성 2년 내 약정총액의 40%, 4년 내 100% 이상을 한국영화에 투자</p>
실감콘텐츠	<p>○ 실감콘텐츠 등 가상융합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M&A 목적의 투자**도 인정.</p> <p>* VR·AR·MR, 홀로그램, CG·VFX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5G, AI, IoT)을 융합한 실감콘텐츠 등 가상융합산업 중소·벤처기업</p> <p>** M&A 목적 투자 인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A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투자하되, 단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최대주주, ②등기임원 과반수 선임, ③대표이사 선임, ④ 투자한 투자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여 상기 ①~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구주투자를 통한 M&A는 약정총액 30%이내에서 인정 3) M&A투자 시 인수기업 또는 피인수기업 중 1군데는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어야 함 <p>***실감콘텐츠 분야 공통 적용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콘텐츠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VFX,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
공공기술사업화	<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술 사업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하되 창업 초기기업^{주1)}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5% 이상 투자</p>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① 공공연구기관^{주2)}의 기술(특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투자시점 2년 이내 기술이전, 출자, 양도 등을 통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거나, 투자 후 3개월 이내에 확보 예정[*]인 경우</p> <p>* 투자 후 3개월 내 확보 실패 시 의무투자 달성금액에서 제외</p> <p>② 투자시점 3년 이내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주3)}을 수행하여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p> <p>③ 국가연구개발사업^{주3)}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해당 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p> <hr/> <p>주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p> <p>주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p> <p>주3)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어야 함)</p>
<p>영·호남 특구기업 육성</p>	<p>○ 영·호남^{주1)}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 투자해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p> <p>- 영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 총액의 20%이상 투자하고 호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20%이상 투자</p> <p>- 영·호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창업초기^{주2)} 기업에 약정 총액의 30% 이상 투자</p> <p>주1) (영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 (호남) 광주, 전북, 전남</p> <p>주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p> <p>* 연구개발특구 권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약정금의 2배 이내를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의 권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지자체 및 기관별 세부 의무투자비율은 협의를 통해 정함</p> <p>** 한국벤처투자과 연구개발특구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본 펀드와 연구개발특구재단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p>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국토교통혁신</p>	<p>○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산업에서 국토교통 분야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p> <p>* 국토·토지·주택·도시·건축·건설·교통·도로·철도·항공·물류 등 인프라, 공간과 관련된 일체의 산업</p> <p>**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과학기술</p> <p>***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운수사업 제외</p>																
<p>국토교통 스마트 디지털 융합</p>	<p>○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디지털 엔지니어링, 건축 BIM 등 포함), 그린 리모델링 분야 기술을 개발·보유·사업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p> <table border="1" data-bbox="416 757 1430 1848"> <tr> <td data-bbox="416 757 564 891">드론</td> <td data-bbox="564 757 1430 891">드론 안전운항 및 교통관리를 위한 인프라(통신·항법·정보공유), 비행체, 관제 시스템 관련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891 564 1025">스마트물류</td> <td data-bbox="564 891 1430 1025">물류효율화 및 자동화를 위한 화물 운송, 환적, 하역, 이송, 분류, 보관, 포장, 배송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1025 564 1160">자율주행차</td> <td data-bbox="564 1025 1430 1160">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첨단 도로인프라(통신·측위·보안 등), 차량, 교통운영관리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1160 564 1294">스마트시티</td> <td data-bbox="564 1160 1430 1294">도시 내 초연결 실현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관리·제공 플랫폼, 관리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1294 564 1429">스마트건설</td> <td data-bbox="564 1294 1430 1429">건설 효율성·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설재료, 시공, 유지보수, 해체 등 건설 전(全)공정 관련 새로운 재료·장비 개발, 자동화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1429 564 1563">디지털 엔지니어링</td> <td data-bbox="564 1429 1430 1563">건설 프로세스 중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DB화하고 원가, 공정, 품질 관리 등 엔지니어링 요소 최적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1563 564 1697">건축 BIM</td> <td data-bbox="564 1563 1430 1697">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건설 설계, 시공, 검증, 평가 관련 기술 및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416 1697 564 1848">그린 리모델링</td> <td data-bbox="564 1697 1430 1848">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td> </tr> </table>	드론	드론 안전운항 및 교통관리를 위한 인프라(통신·항법·정보공유), 비행체, 관제 시스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물류	물류효율화 및 자동화를 위한 화물 운송, 환적, 하역, 이송, 분류, 보관, 포장, 배송 기술 및 서비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첨단 도로인프라(통신·측위·보안 등), 차량, 교통운영관리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시티	도시 내 초연결 실현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관리·제공 플랫폼, 관리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건설	건설 효율성·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설재료, 시공, 유지보수, 해체 등 건설 전(全)공정 관련 새로운 재료·장비 개발, 자동화 기술 및 서비스	디지털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세스 중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DB화하고 원가, 공정, 품질 관리 등 엔지니어링 요소 최적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건축 BIM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건설 설계, 시공, 검증, 평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
드론	드론 안전운항 및 교통관리를 위한 인프라(통신·항법·정보공유), 비행체, 관제 시스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물류	물류효율화 및 자동화를 위한 화물 운송, 환적, 하역, 이송, 분류, 보관, 포장, 배송 기술 및 서비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첨단 도로인프라(통신·측위·보안 등), 차량, 교통운영관리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시티	도시 내 초연결 실현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관리·제공 플랫폼, 관리 기술 및 서비스																
스마트건설	건설 효율성·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설재료, 시공, 유지보수, 해체 등 건설 전(全)공정 관련 새로운 재료·장비 개발, 자동화 기술 및 서비스																
디지털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세스 중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DB화하고 원가, 공정, 품질 관리 등 엔지니어링 요소 최적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건축 BIM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건설 설계, 시공, 검증, 평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																
<p>사회적기업</p>	<p>○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로 함</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p> <p>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p> <p>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p>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p> <p>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중 존속기간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단, 존속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주목적투자대상에서 제외</p> <p>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설치된 사회적기업투자조합 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특허기술 사업화</p>	<p>○ 우수 기술평가 기업^{주1)} 및 지식재산권(IP) 출원지원 등^{주2)}에 투자대상금액*의 8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p>①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30% 이상 투자</p> <p>②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주2)} 등에 최소결성금액**의 10% 이상 투자</p> <p>- IP출원지원 프로젝트에 최소결성금액**의 6% 이상, 중소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투자기업 당 투자금의 4% 이상 투자</p> <p>- 단, IP출원지원 프로젝트는 2개사 이상에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 후 투자금액 1억원 당 1건 이상의 해외출원 실적을 달성하여야 함</p> <p>③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주3)}에 최소결성금액**의 3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 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p> <p>* 투자대상금액 : 총 투자금액</p> <p>** 최소결성금액 :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금액 합계액의 2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주1) · 우수 기술평가 기업 :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p> <p>· 투자용 TCB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등</p> <p>· 기술가치평가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p> <p>*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IP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인정함</p> <p>주2)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등 : IP 출원지원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p> <p>· IP 출원지원 프로젝트 :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투자하는 프로젝트(2개사 이상에 분할투자)</p> <p>· 중소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 :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료, 대리 비용, 특허 매입, 라이선스 비용, 특허 전략·보호, 컨설팅 등</p> <p>주3)· IP프로젝트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 단, IP프로젝트에 포함된 산업재산권 중 우리나라(중소기업·대학·공공연 등)에서 출원한 산업재산권 건수가 30% 이상이어야 함</p> </div> <p>※ 지식재산권 수익화 등에 대한 주목적 투자 관련 세부 정의 및 주목적 투자비율 등은 공동출자자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IP 클라우드펀딩</p>	<p>○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이상 투자. 단,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거나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클라우드 펀딩** 진행 예정****인 IP보유(국내·외 등록 특허 1건 이상)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IP프로젝트에 10% 이상 투자</p> <p>※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단, IP서비스기업 투자 시에는 제외하며, IP프로젝트 투자 시에는 선택사항임)</p>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 단, IP프로젝트에 포함된 산업재산권 중 우리나라(중소기업·대학·공공연 등)에서 출원한 산업재산권 건수가 30% 이상이어야 함</p> <p>** 한국클라우드펀딩협회 회원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경우로 한정</p> <p>***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으로 등록 목표금액의 80% 이상 달성한 경우</p> <p>****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클라우드 펀딩 미진행 시 의무투자 달성실적에서 제외</p>
미래 환경산업	<p>○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단, ②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p> <p>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분야(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분야 - 환경부고시 2017-제257호 환경산업특수분류표 상의 업종 -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등 정부대책 세부추진계획 관련분야 산업(스마트기술 융합 환경산업, 생물소재 및 생태서비스 산업, 폐자원 업사이클 산업 등) <p>** 최대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의 정의에 따름)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약정 총액 20% 이내)</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p>
해양 신산업	<p>○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등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대상 해양 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p> <p>* 해양 바이오, 해양 관광, 친환경 선박,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p> <p>** AI, IT, 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p> <p>***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3호의 해양수산업(다만, 동법 제3조3호 가목 등 수산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하며, 조선산업은 포함한다.)</p>

주1)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의무

- 약정총액의 30% 이내에서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 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재투자 관련

분야별	세부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분야	<p>· 투자건별로 원금 이상 회수한 금액(수익) 범위 내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 가능. 단, 재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약정액의 150% 이내로 제한</p>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p>·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 출자자 관련 투자집중 여부, 자펀드 수익률 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p> <p>* 단, 2022년까지는 투자건별로 원금 이상 회수한 금액(수익) 범위 내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 가능(재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약정액의 150% 이내로 제한)</p>

- 프로젝트 투자 시 다음 사항 적용

1. 투자 제한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
 -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 이전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
2. 준수 의무 사항
 -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설치(단, 자조합 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 대체 가능
 - 공연예술 분야 투자시, 해당 공연의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연예술통합전산망 (www.kopis.or.kr)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주2) 영화계정 관련 적용사항

- 기획개발 투자시 준수사항

한국영화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완성 이전 단계 투자에 한함 - 메인투자 목적 외 기획개발 투자 금지 - 연간 3편 초과 투자 금지 - 편당 2억원 초과 투자 금지 - 조합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에만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완성 이전 단계 투자에 한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 상장기업과 그 계열사에서 선행 투자된 프로젝트 투자 금지 - 편당 2억원 초과 투자 금지 - 투자 후 90일 이내 크랭크인(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고시 기준) 시 주목적 투자 불인정

- 기타 적용사항

항 목	한국영화 메인투자	중저예산 한국영화
조합 운영	전 담 인 력	- 해당사항 없음
	투 자	

	<p>심 의</p> <p>활용 전략 반드시 포함</p> <p>* 투자심의위원회 운용 구조는 운용사가 자율 설계 및 제안 필수(※단, 외부전문가는 의결권 없음)</p> <p>* 운용사 제안서 PT 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발표 의무</p>					
출자자 모집	<p>- 영화 투자·배급·제작 상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조합 출자 금지</p>					
계정 관리	<p>- 조합의 자산은 조합 계좌 내 회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p> <p>* 한국영화 메인투자: 순제작비 60억원 이하 / 순제작비 30억원 이하 / 일반 한국영화</p> <p>* 중저예산 한국영화: 중예산 / 저예산 / 일반 한국영화</p>					
투자 시 준수사항	<p>- 투자기업의 회계와 구분되는 프로젝트 별도계좌 에 투자 의무 적용</p> <p>- 투심위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 투자 금지(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및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p> <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순제작비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단, 근로기준법 개정 및 표준계약서 변경 시 개정된 법률 및 변경된 표준계약서를 따름</p> <p>- 투자제작계약서상 스태프 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의무 삽입</p>					
영화투자·배급·상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관련투자	<p>- 주목적 외 투자는 관련 프로젝트 투자 금지 (※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 및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의 투자·배급 허용)</p>	<p>- 관련 프로젝트 투자 금지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 및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의 투자·배급 허용)</p>				
주요출자자 관련 영화 프로젝트	<p>- 주요출자자가 제작한 영화는 투자 금지</p> <p>- 주요출자자 관련 영화 프로젝트 투자한도는 조합 투자총액의 40% 이내로 제한</p>					
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한도	<p>- 동일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20%</p> <p>-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p> <table border="1" data-bbox="331 1509 863 1585"> <tr> <td>주목적 투자</td> <td>주목적 외 투자</td> </tr> <tr> <td>프로젝트 총제작비의 50%</td> <td>출자약정액의 10%</td> </tr> </table> <p>* 단, 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조합원 전원 동의로 조정 가능</p> <p>- 동일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20%</p> <p>-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 출자약정액의 10%</p> <p>* 단, 동일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조합원 전원 동의로 조정 가능</p>		주목적 투자	주목적 외 투자	프로젝트 총제작비의 50%	출자약정액의 10%
주목적 투자	주목적 외 투자					
프로젝트 총제작비의 50%	출자약정액의 10%					
기타	<p>- 주목적 투자 대상은 제출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투자</p> <p>- 한국영화 메인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 등록</p> <p>- 상기 투자의무비율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기간의 관리보수 삭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 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p>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투자 방법	<p>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p> <p>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p> <p>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p> <p>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p> <p>*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p>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p>○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p> <p>*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p>								
자조합의 투자의무	<p>○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p> <p>○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의무로 부여 가능</p>								
출자금 납입방식	<p>○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p> <p>*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분야는 분할납(3회 이상)만 가능</p>								
투자(납입)기간	<p>○ (문화, 특허, 환경, 해양) 2년 이상</p> <p>○ (영화-중저예산, 중진고용, 과기-실감콘텐츠) 4년</p> <p>○ (영화-메인투자) 5년</p> <p>○ (과기-공공기술사업화, 연구) 투자기간 4년 이내</p> <p>○ (국토) 4년 이상</p>								
존속기간	<p>○ (문화, 환경) 5년 이상</p> <p>○ (국토, 해양) 8년 이상</p> <p>○ (중진고용, 과기, 연구) 8년</p> <p>○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 7년, 중저예산 5년</p> <p>○ (특허) 5년 이상</p>								
관리보수	<p>○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p> <p>○ 관리보수 지급기준</p> <p>-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p> <p>-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p> <p>*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p> <p>-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p> <p>-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p> </div> <p>※ 중진(고용)계정의 경우 관리보수는 2.5%로 적용</p> <p>※ 단, 특허청 소관 특허기술사업화분야는 공동출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p>								
기준수익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수익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이상</td> <td>국토교통혁신계정, 연구특구계정, 특허계정(특허기술사업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이상</td> <td>영화계정, 과기정통계정, 문화계정(콘텐츠기업재기지원), 해양계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이상</td> <td>중진(고용)계정, 문화계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허계정(IP크라우드펀딩), 환경계정</td> </tr> </tbody> </table> <p>*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p>	기준수익률	계정	3% 이상	국토교통혁신계정, 연구특구계정, 특허계정(특허기술사업화)	2% 이상	영화계정, 과기정통계정, 문화계정(콘텐츠기업재기지원), 해양계정	1% 이상	중진(고용)계정, 문화계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허계정(IP크라우드펀딩), 환경계정
기준수익률	계정								
3% 이상	국토교통혁신계정, 연구특구계정, 특허계정(특허기술사업화)								
2% 이상	영화계정, 과기정통계정, 문화계정(콘텐츠기업재기지원), 해양계정								
1% 이상	중진(고용)계정, 문화계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허계정(IP크라우드펀딩), 환경계정								

항 목	내 용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중진고용)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5%이내 ○ (문화, 영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30%이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영화, 특허-IP클라우드펀딩 분야)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 <table border="1" data-bbox="391 573 1410 80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th> <th colspan="2" style="width: 20%;">조정 전</th> <th rowspan="2" style="width: 20%;">조정</th> <th colspan="2" style="width: 20%;">조정 후</th> </tr> <tr> <th style="width: 10%;">관리 보수율</th> <th style="width: 10%;">성과 보수율</th> <th style="width: 10%;">관리 보수율</th> <th style="width: 10%;">성과 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300억원</td> <td>2.5%</td> <td>20%</td> <td>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td> <td>2.3%</td> <td>24%</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500억원</td> <td>2.3%</td> <td>20%</td> <td>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td> <td>2.0%</td> <td>26%</td> </tr> </tbody> </table>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 																						
전자보고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추가 성과보수	<p>○ 운용사는 다음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 성과보수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계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서</th> <th style="width: 55%;">적용조건</th> <th style="width: 30%;">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창출</td> <td>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td> <td>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주보통주</td> <td>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td> <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기창업자</td> <td>「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50% 이상일 경우</td> <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적달성</td> <td>주목적 투자 의무 비율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td> <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투자</td> <td>지방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td> <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body> </table> <p>* '지방투자'는 콘텐츠기업재기지원 분야에 한해 제안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계정 실감콘텐츠 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서</th> <th style="width: 55%;">적용조건</th> <th style="width: 30%;">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창출</td> <td>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td> <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단, 4대보험 기준으로 판단)</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계정 공공기술사업화 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서</th> <th style="width: 55%;">적용조건</th> <th style="width: 30%;">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창출</td> <td>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td> <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혁신계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서</th> <th style="width: 55%;">적용조건</th> <th style="width: 30%;">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td> <td>① 창업초기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td> <td>-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td> </tr> </tbody> </table>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신주보통주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초기창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5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목적달성	주목적 투자 의무 비율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방투자	지방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단, 4대보험 기준으로 판단)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투자	① 창업초기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	-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신주보통주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초기창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5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목적달성	주목적 투자 의무 비율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방투자	지방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단, 4대보험 기준으로 판단)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투자	① 창업초기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	-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항 목	내 용	
실적	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이내 - 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목적 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중진고용계정>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목적 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특히계정>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0.7명 이상의 40대(만 40세~49세,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고용 창출한 경우 ③ ②의 조건을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1명 이상 달성한 경우	①,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투자실적	40대 창업기업(창업시기 기준 대표가 만 40세~49세인 기업)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35%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환경계정>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초기창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항 목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div>										
	<해양계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서</th> <th style="width: 55%;">적용조건</th> <th style="width: 30%;">추가성과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기창업자</td> <td>「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적달성</td> <td>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td> </tr> </tbody> </table>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초기창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초기창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목적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6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중복신청 가능(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우선손실충당	<div style="text-align: center;"> < 문화, 영화계정 >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문화산업 이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의 10%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출자목적 예산을 재원으로 출자한 정부/지자체 및 정책기관(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은 부여대상에서 제외 ** 문화(아시아문화중심도시분야)계정의 경우 주목적투자 금액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함 										

6. 기타 사항

- 운용사별 조합 신청 가능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20년 선정조합 중 투자촉진 1안 또는 2안 신청사는 해당 투자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첨부 양식 참조)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분	상세내용	문화	영화	과기 정통	연구 특구	국 토	중 진 고 용	특 허	환 경	해 양
LP 모집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	○	○	○	○	○
출자금 납입 방식	출자금 납입방식을 '일시납'으로 제안하는 경우 * '일시납'으로 제안 후 선정 시, 조합은 '일시납'으로만 결성 가능	○ 주3)	○							
지방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영·호남 지역에 본점 또는 사무소가 소재하고 운용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 주3)							○	
출자 비율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10%P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	○	○	○	○	○	○	○
투자 제안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주1)			○						
	최종 선정 시,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1 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주2)									○
기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산 업 공정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영화 메인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 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한국영화메인투자 분야에만 적용)		○							

구분	상세내용	문화	영화	과기 정통	연구 특구	국 토	중 진 고 용	특 허	환 경	해 양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에만 적용)		○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 중 변리사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제안사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

주1) 공공기술사업화 분야에 한정

주2)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1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여 최종 선정되는 경우

- 투자목표 달성 의무 및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규약 협의 시 반영 예정 (세부 내용은 규약 협의 시 안내)

주3) 문화계정 콘텐츠기업재기지원 분야에 한정

(2) 벤처투자 촉진 확약(안) 적용안내

- 기한: '21년 1분기 모태펀드 출자사업(공고일 기준)
- 대상: '20년 선정조합 중 투자촉진 1·2안 및 Fast-Closing 선택 운용사
 - * 근거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월)」
 - * 투자촉진 1안 : '20년 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의 20%이상 투자
 - 투자촉진 2안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투자집행 완료
 - Fast-Closing : Fast-Closing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승인금액의 100%를 모집
- 내용: 벤처투자 촉진 확약에 대한 달성·실패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
- 출자비율 상향: '투자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에 대해 제안분야 출자비율 한도를 최대 10%p 이내에서 상향하여 제안 가능하고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 예) 촉진 1안을 2개이상 조합에 복수로 신청하고, ① 모두 달성을 못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② 하나만 달성한 경우 1개 분야 10%p 이내에서 신청가능, ③ 모두 달성한 경우 최대 2개 분야 각 10%p 이내에서 신청가능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 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미제출시 선정배제**) 기준으로 판정함. 단,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

배제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유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유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3) 선정 보류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한 경우
-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아. 스마트대한민국(멘토기업 매칭출자) 분야의 경우, 선정된 멘토기업의 출자가 취소되거나 출자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증액은 허용)

3. 제재 사항

-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 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제한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1. 3. 24.(수) 10:00부터 '21. 3. 31.(수)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
선정	'21. 5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Ⅳ.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구분	내용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5.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붙임4. 참조) *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http://install.kvic.or.kr</div>
출자 설명회(안)	- 일 시 : 2021.3.10.(수)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게시(예정)

* 상기 일정은 특이사항 발생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 문의 방법

- 영화 : 02-2156-2018, kimtaehyen@kvic.or.kr
- 문화 : 02-2156-2489, jyshin@kvic.or.kr
- 국토교통혁신 : 02-2156-2158, iron9113@kvic.or.kr
- 중진(고용) : 02-2156-2012, 2030jsy@kvic.or.kr
- 특허기술사업화, IP클라우드펀딩 : 02-2156-2030, storybowl@kvic.or.kr
- 실감콘텐츠: 02-2156-2460, jinwoolim@kvic.or.kr
- 공공기술사업화,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 02-2156-2030, storybowl@kvic.or.kr
- 미래환경산업, 해양 신산업 : 02-2156-2223, cykim@kvic.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1. 2. 24.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별첨 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벤처투자조합]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 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 (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 억원

〈별첨 2〉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